

NEWSLETTER

August 2022

기업자문 그룹 / 자본시장 그룹
M&A Group / Capital Markets Group

CONTACT



변호사 김성민

T: 02.772.4979
E: sungmin.kim@leeko.com

변호사 현승아

T: 02.772.4389
E: seunga.hyun@leeko.com

변호사 장제한

T: 02.2191.3042
E: jehwan.jang@leeko.com대량보유보고 (5% 보고)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데 대한 대량보유 등 보고(대량보유보고)에 있어, 앞으로는 주식 등의 '보유 목적'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공시실무 안내서 또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12월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

1. 대량보유보고시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량보유보고의 유형에는 (i)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최초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하는 '신규 보고', (ii) 신규 보고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변동 보고', (iii) 보고한 내용 중 보유 목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변경 보고'가 있으며, 대량보유자는 신규 보고, 변동 보고, 변경 보고시에 항상 '보유 목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동법 시행령 제153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1항 제3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는 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변경, 합병 등 경영권 행사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1항 제3호는 보유 목적 보고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침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경우 '보유 목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별지 제44호 서식).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량보유보고 실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영권 행사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들을 열거하는 등 보유 목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세부적인 계획은 공시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보고 시 ①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대량보유 보고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② 「기업공시 실무

안내」를 개정하여 보고의무자가 실제 보고 의무 이행 시 참고 가능한 예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 '보유 목적'기재의 구체적 기준

개정 예정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보유 목적'의 기재 방식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권 행사 목적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량보유보고 시점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을 보유목적으로 하여 보고해야 하고, 이 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사전에 수립된 주주 활동 지침 등에 따라 주주 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상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그 판단은 외부에 드러난 여러 정황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행사 목적이 있더라도 아직 구체적 경영권 행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경우 정정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구체적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권 영향 목적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의 기재 예시

“보고자 본인은 장래에 (주)☆☆에 대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대량보유보고 시점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시 경영권 영향 목적의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예시 사유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의 보고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구체적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구체적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체적 계획의 기재 예시

예시 ①. 임원의 선임

“보고자 본인은 (주)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000은 모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주)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000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 X. 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선임 이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예시 ②. 합병

“현재 ◆◆(주)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주)▽▽▽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본인은 ◆◆(주)의 주주로서 (주)▽▽▽과의 인수합병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이 ◆◆(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 X. 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합병 추진배경, 합병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예시 ③. 정관의 변경

"현재 (주)■■■■■은 ■■■(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는 ◇◇◇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비단 (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상 인수 비용이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은 정관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과도한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인수는 (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고자 본인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연합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22.X.XX.)하고자 합니다."

→ 정관 변경 추진배경, 변경에 대한 입장,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기재

(3)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한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i)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투자' 목적 또는 (ii) 주주로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인 '단순 투자' 목적 중 해당하는 목적으로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기업공시 실무 안내」 개정의 시사점

이번 대량보유보고 조치는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없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만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종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수준의 구체적인 기재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고주체들로서는 이 예시들을 추종하여 공시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유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법제화 추이 또한 적기에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